

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)

가. 개정이유

○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규정과 사용료 규정의 조문 분리로 항 번호 삭제(안 제8조)
-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(POEX) 사용료 규정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수탁자의 위탁 해지 사항 신설(안 제13조)
-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용료 징수기준 수정(별표 2)

다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-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(POEX)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시설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사용료 체계와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, 사용료 할인·할증과 관련하여 상한·하한 또는 부과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,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